#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17

발의연월일: 2023. 5. 23.

발 의 자:유기홍·김영호·문정복

서영교 · 김철민 · 조승래

박찬대 • 윤영덕 • 정태호

전재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선도·교육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경우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려워지고 더불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6조).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방과 대책을"을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을 "운영,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피해학생의"를 "법률지원 등 피해학생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부서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	9
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u>운영</u>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	<u>운영, 법률지원</u>
치・운영할 수 있다.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	
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	

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 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6. 그 밖에 <u>피해학생의</u>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sim$	(8)	(생	략)
_			\	1/

1. ~ 5. (현행과 같음)
6법률지원 등 피해
<u>학생의</u>
② ~ ⑧ (현행과 같음)